2026년 9월 가족친화제도 실적

확 인 항 목	기준인원	실 적	비 고
주 52시간 근로 준수 여부	88명	88명	임원, 파견 제외
임원 노사협의회 참여 여부	-	-	-
출산 전·후 휴가 사용 후 고용유지 직원[1]	-	-	-
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직원[2]	-	-	-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직원[3]	-	-	-
유연근무제 사용 직원	88명	23명	임원, 파견 제외
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현황	88명	77명	임원, 파견 제외
자녀학자금을 지원받은 직원	-	-	-
가족휴양시설 이용 직원	-	-	
가족돌봄휴직 사용 직원	-	-	-
가족돌봄휴가 사용 직원	-	-	-

확 인 항 목	기준인원	남	여	비 고
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직원[4]	8명	-	3명	이○주, 김○진 이○은
남·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 직원	-	-	-	-
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직원	8명	1명	-	정○형

1) 출산 전·후 휴가 종료일 기준
 -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인정
2)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수
3) 복무규정 제21조2에 따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직원
4) 육아휴직 :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둔 여직원
 근로시간 단축 :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둔 여직원